

## 전과(부) 시행 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4조, 제25조에 따라 전과(부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준)** ① 전과(부)는 2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대하여 제2학년 학과별 입학정원의 50% 범위내에 매학기초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7.02.23.)

② 제1항의 전과(부) 정원은 1학기와 2학기 인원을 통산한다.

**제3조(지원과 선발)** ① 전과(부)를 지원하는 자는 전과(부)하고자 하는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전입 학과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학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당년도 입학자부터 신설학과 전과가 가능하다. (신설 2019.06.25.)

③ 전과(부)는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이 평점평균 2.5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3.01., 2013.09.27., 2014.05.28., 2017.02.23.)

④ 전과(부)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, 전입여부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4조(제한범위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과(부)를 할 수 없다.

1. 예·체능계로 입학한자

2. 편입생

3. 주간학과 입학자는 야간학과로, 야간학과 입학자는 주간학과로의 전과

4. 유아교육학과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응급구조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약학과, 의학과, 한의학과 및 예·체능계 학과로의 전과(개정 2017.02.23.)

5. 입학당시 편제에 없는 학과로 전과한 자의 졸업기준 이수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해당학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(신설 2017.02.23.)

**제5조(이수과목 및 학점)** 전과(부)를 한 자는 전입학과에 정한 소정교과목을

## 2-1-5~2 제2편 학 칙

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**제6조**(이수년한) 전과(부)한 자의 재학년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한다.

**제7조**(장학금수혜제한) 전과(부)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.

**제8조**(적용 예외) 예·체능계로 입학한 자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실기수업을 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석의 범위 내에서 전과(부)를 허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3학년도에 신설된 5년제 건축학전공으로의 전과(부)는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③(모집단위 또는 전공 폐지에 따른 전과(부)에 관한 특례) 모집단위 또는 전공이 폐지된 경우 재적하고 있는 2·3학년에 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의학과 예·체능계를 제외한 타 모집단위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(부)를 허가할 수 있으며,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. 전과(부)를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기부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.

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본 시행세칙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에 관한 특례) 2019학년도에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에너지IT학과의 재학생 중 2017년 편입생에 대하여 제4조 2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에 관한 특례) 2019학년도에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에너지IT학과의 재학생 중 2018년 편입생에 대하여 제4조 2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본 시행세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